

##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의 대체적해결방법으로서 ADR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 중심으로-\*

ADR systems as solutions to reduce disputes of cosmetic law  
- Focusing on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Customized Cosmetic  
Preparation Managers -

김주리\*\*

Ju Ri Kim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맞춤형화장품의 개념
  - III. 화장품 산업계 현황
  - IV. 국내·외 화장품법 비교
  - V.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과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제도
  - VI. 맺으며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화장품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책임관리자, ADR제도, 화장품산업체

\* 본 연구는 2021년 장안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뷰티케어과 조교수, 법학박사, [jmami69@jangan.ac.kr](mailto:jmami69@jangan.ac.kr)

## I. 서 설

### 1. 목적과 필요성

화장품 산업은 국내 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의 확대,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와 K-Beauty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성장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장품 산업의 발달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제품 개발과 새로운 판매 형식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화장품 시장에서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닌 고객의 피부분석을 통하여 고객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현장에서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메조미디어 ‘2020 화장품 업종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의 필요성 조사<sup>1)</sup>에서 1040여성 57%가 맞춤형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장품보다 잘 맞다.’ 70%, ‘가격이 높은 만큼 가치가 있다’ 59%, ‘효과를 믿을 수 있다’ 54%, ‘화장품 성분/원료에 신뢰가 간다.’ 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로 소비자들은 일반화장품 보다 개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화장품 산업체에서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등 대기업뿐 아니라 그 외 많은 화장품 산업체에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모닝 기사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2020년 3월에 시행되고 3개월 만에 58곳의 업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였다<sup>2)</sup>. 3개월만에 58업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면 산업체들의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맞춤형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사업 활성을 위한 피부분석기 개발, 피부유형 빅데이터 확보,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로레알, 시세이도, 키엘, 크리닉 등 해외 화장품 기업들도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술개발과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sup>3)</sup>가 시행되면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

1) CJENM, 메조미디어 ‘2020 화장품 업종 분석 리포트, 2020.03.24자.

2) 허강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모두 58곳 신고 완료”, 「코스모닝」, 2020.06.13.자,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012>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는 책임 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

격증 소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이 도입된 이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화장품 사업의 활성화였지만 높은 시험 응시료, 문제의 적합성, 산업체의 활용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2020년 3월에 시행된 제1회 시험에 비하여 2021년 3월에 시행된 제3회 시험에서는 제1회 시험의 절반 정도의 인원이 응시하였으며 합격률도 7.2%에 불과하였다<sup>4)</sup>. 이러한 자격증 제도 도입의 이유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도 있겠지만 해외에 없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자격제도가 우리나라 화장품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표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응시 및 합격현황

구분 (시험일자)	제1회 (2020.2)	특별 (2020.8) <sup>5)</sup>	제2회(2020.10)	제3회 (2021.03)
응시자(명)	8,837	875	6,720	4,353
합격자(명)	2,928	87	679	314
합격률(%)	33.1	9.9	10.1	7.2

출처: CNC News(2020.11.03.), (2021.03.2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법 제3조의4에 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을 갖추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가 실시된 의미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자격시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자격시험은 화장품회사에 재직 중인 화장품학과 출신들조차도 합격이 어려운 시험문제의 높은 난이도와 화장품 조제에 관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시험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화장품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의 난이도를 낮춘다면 화장품을 조제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화장품은 일반인들이 매일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화장품 성분 중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도 있어서 함량이나 기준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최지흠, “[용두사미 화장품법③] “DIY 키트 팔 때가 낫다...” 맞춤형화장품제 무용론“, 『시장경제』, 2021.05.03. 자,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23>

5) 특별 : 1회 시험당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에 한해 시행.

지키지 않고 화장품을 조제한다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소액으로 발생하거나 피부부작용 등 개인의 주관적인 피해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ADR 제도는 이러한 소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므로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ADR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맞춤형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의 산업계 현황과 국내·외 화장품법을 비교하여 고찰하고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방안으로 ADR 제도를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시행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 2. 선행연구 분석

2020년 홍지유의 논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방향성에 대한 연구’<sup>6)</sup>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실기검정이 없고 응시자격 제한도 없으며 교육체계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능력 함양 및 실무 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실무능력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자격증이므로 필기검정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실기검정을 추가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보장하는 자격증이 되어야 함으로 피부분석 기기사용이나 화장품 조제 등을 이론 위주로 학습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내용이나 분량을 보장하거나 이론형 교과로만 구성된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실습형 교과를 추가 신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다. 2017년 7월, 정부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을 명시했으며, 2018년 2월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를 대안 법률로 공포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를 위한 피부분석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었다. 2020년 오정은의 논문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식 및 맞춤형화장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sup>7)</sup>에서, ‘DTC 유전자 검사 후 맞춤형화장품 구매의향이 있다.’에 76.8%, DTC 유전자

6) 홍지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방향성에 대한 연구: 피부미용사의 직무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pp.112~113

7) 오정은,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식 및 맞춤형화장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pp.93-95.

검사 후 맞춤형화장품 구매이유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측정을 통한 내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 같아서’가 80.5%로 조사되었다. 이 논문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화장품과 조제관리사가 진행하는 DTC 유전자 검사와 전문 피부측정기로의 정확한 피부진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나경의 논문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sup>8)</sup>에 의하면 의업계에서는 DTC-유전자검사의 정당성이 왜곡 될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DTC-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전문적 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상담이나 기타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의 불완전성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검사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다.

## II. 맞춤형화장품의 개념

### 1. 맞춤형화장품 정의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은 기존에 제조된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화장품법 제2조9)에 3의2에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적절한 시설과 장소를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이나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장마다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김나경,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ol.19. no.3, 통권39호, 2018, pp. 81-120

9) 화장품법 제1장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다.

##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화장품법 제3조의4<sup>10)</sup>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책임판매관리사의 자격 기준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8조의2 제5항에 자격시험 운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식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이다. 시험의 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이 60점 이상, 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2조의2에서 화장품 영업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가지로 구분된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사의 자격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의사, 약사, 관련 학과 전공자,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자,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자격시험합격자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Ⅲ. 화장품 산업계 현황

### 1. 화장품 사업의 규모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CJENM, 메조미디어 ‘2020 화장품 업종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2017년 13조에서 2020년은 14조 원으로 매년 4%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은 15.2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의 수출입의 추이를 보면 1995년 수출액은 약 3천만 달러, 수입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약 1억 5천만 달러였다. 하지만 2012년 수출액이 약 11억 달러이고 수입액이 약 9억 8천만 달러로 최초로 화장품이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이후로는 지

10) 화장품법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 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속적으로 화장품이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수출액이 약 63억 달러이고 수입액이 13억 달러로 무역흑자를 약 5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화장품이 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표 2> 화장품 연도별 5대 수출국

단위 : USD 1,000

2016		2017		2018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출액
중국	1,569,712	중국	1,932,284	중국	2,656,162
홍콩	1,244,089	홍콩	1,222,447	홍콩	1,315,009
미국	346,972	미국	445,471	미국	538,183
일본	182,674	일본	225,390	일본	302,600
대만	135,952	대만	154,457	베트남	168,318

출처: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표 3> 화장품 연도별 5대 수입국

단위 : USD 1,000

2016		2017		2018	
국가명	수입액	국가명	수입액	국가명	수입액
프랑스	293,805	프랑스	404,810	프랑스	364,740
미국	293,456	미국	367,483	미국	314,615
일본	170,563	일본	223,891	일본	213,513
이탈리아	47,514	이탈리아	80,525	태국	55,231
영국	46,177	영국	57,002	이탈리아	40,428

출처: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표2>과 <표3>의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국이자 수입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1위 국가이지만 수입은 겨우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화장품만 본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매우 좋은 시장으로 판단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020년6월 뷰티누리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난해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미국/ EU 등의 제도를 상당부분 가져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고 있고 아세안도 미국과 EU와 비슷하게 화장품을 분류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1)</sup>.

화장품의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한 법률도 국제규정에 맞춰야 할 것이다.

11) 뷰티누리, 중국 글로벌 트렌드 도입 등 아세안 화장품 규정 변화 중, 2020.06.17.,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89118/cat/10>

## 2.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 변화

정부에서도 맞춤형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식약처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확대의 주요 정책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인정 관련법 개정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인정해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표4>과 같이 2021년 5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였다.

<표 4> 화장품법시행규칙 주요 변경/개선 내용

항목		현행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2년 근무 등 필요	(추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1년이면 충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교육이수의 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의 경우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 교육 이수 필요 ※ 품질·안전관리 교육 매년 이수 필요	최초 교육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 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기한		15일	10일

출처: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2021.05.14

규제조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장품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미국, 일본 등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sup>12)</sup>)에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2020년 12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증명서 전자 발행 서비스, 어린이화장품 입증자료 구비 의무 면제’ 등 제도개선 통한 수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5월부터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을 도입하였고<sup>13)</sup>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3. 맞춤형화장품을 위한 국내 산업체 변화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화장품의 기반을 잡기 위해 현재 서울 명동에서 피부 진단 및 유전자 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1만 명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목표인데 202년 초 기준으로 피부 측정 데이터 5,193건, 유전체 분석 데이터는 1,247건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3D 프린팅과 IoT 기술(Internet of Things<sup>14)</sup>)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로부터 맞춤형화장품을 즉시 제조 및 제공하는 ‘IOPE<sup>15)</sup> 테일러드 솔루션’, 이미지 분석 기법을 활용해 피부 특성 파악 및 피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뷰티 테일러 App’,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컬러 테일러 App’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생활건강은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해 2014년에 차앤박화장품인 CNP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CNP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을 개발 중이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맞춤형화장품 시범 사업을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갤러리아 센터시티점에서 CNP Rx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은 CNP Rx 라인 매장 두 곳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 피부분석을 위하여 전문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가 피부 상태 측정기기 ‘Rx-ray’를 사용하여 제품 컨설팅을 진행하고 베이스 앰플에 고민 맞춤 이펙터 샷을 혼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그 외의 화장품 기업들도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다양한 피부 고민을 분석하여 매일 다른 피부 컨디션에 따른 솔루션을 제안하고, 피부 건강을 돕는 ‘굿 스킨 앰플’ 10종을 선보였다. 토니모리는 기능별 퍼스널 쿠션 ‘더 쇼킹 쿠션’ 6종을 출시하였으며, 스킨푸드는 소비자가 계절이나 환경, 피부타입 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3종류의 맞춤형 선크림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피부분석을 하고 있는 산업체는 제니<sup>16)</sup>, ‘전 세계 76억 인구 중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76N1 화장품 회사 등 국내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개발과 피부진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2007년에 설립된 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의학신문」,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604>

13) 이수중,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 「식약일보」, 2021.04.23.자, <http://www.kfdn.co.kr/51575>

14) 사물인터넷·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15) 아모레퍼시픽의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

16) 맞춤형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 2016년에 설립된 바이오헬스케어 한국중소기업

이러한 산업체의 맞춤형화장품 개발과 서비스의 변화는 맞춤형화장품을 고객의 피부를 분석하고 피부타입에 맞게 조제해주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각각의 매장마다 필요하게 되었다.

#### 4. 맞춤형화장품을 위한 국외 산업체 변화

세계적인 기업 로레알은 나이스디앤비의 화장품 산업테마보고서에서 2019<sup>17)</sup>에 기사에 의하면 비바 테크놀로지에 참가하여 가상의 헤어 컬러를 시도하고, ‘버추얼 헤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시세이도는 디지털 변혁을 위해 글로벌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제작하고, 옴니(omni)9 채널 마케팅 자동화에 투자하고 디지털 기술, AI, 데이터 과학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매쓰코, 가이아란, 올리보 래보러토리즈 등 3개 기술 스타트업에 인수하여, 인공 피부 기술, 맞춤형 메이크업,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키엘<sup>17)</sup>은 화장품 전문 상담원을 매장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매장에서 혼합하는 ‘현장 혼합형’ 제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다. 먼저 피부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부 상태 체크북을 활용해 피부를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트리플 예방을 위하여 피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피부 강화 에센스와 5가지 앰플 중 2개를 선택해 맞춤형화장품을 완성한다.

크리니크<sup>18)</sup>는 고객이 3종류 베이스와 부스터, 5종류 카트리지를 선택해 세트 형태로 구매해 사용하는 ‘DIY(Do It Yourself) Kit형’을 운영하고 있다. 세트 듀얼 용기에 결합형이라 비교적 완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프루브<sup>19)</sup>은 최적화한 맞춤 화장품을 개발/제안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한다. ‘피부 게놈 프로젝트’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4,000여 종의 과학 저널 기사, 2만 개가 넘는 스킨케어 성분, 10만 개 이상의 화장품, 800만 건의 평가 및 리뷰 등이 들어있다. 이러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고르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하게 하여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한 맞춤 화장품을 개발해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화장품 기업 외 많은 외국계 화장품 회사들이 맞춤형화장품 사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은 그에 관련된 특정한 자격 관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7) 1851년 미국 약국에서 시작된 화장품 회사, 피부에 맞는 화장품처장 이미지가 강한 화장품 브랜드.

18) 미국 스킨케어 화장품 기업, 에스더로더 자회사,

19) 미국 화장품 전문기업 스킨케어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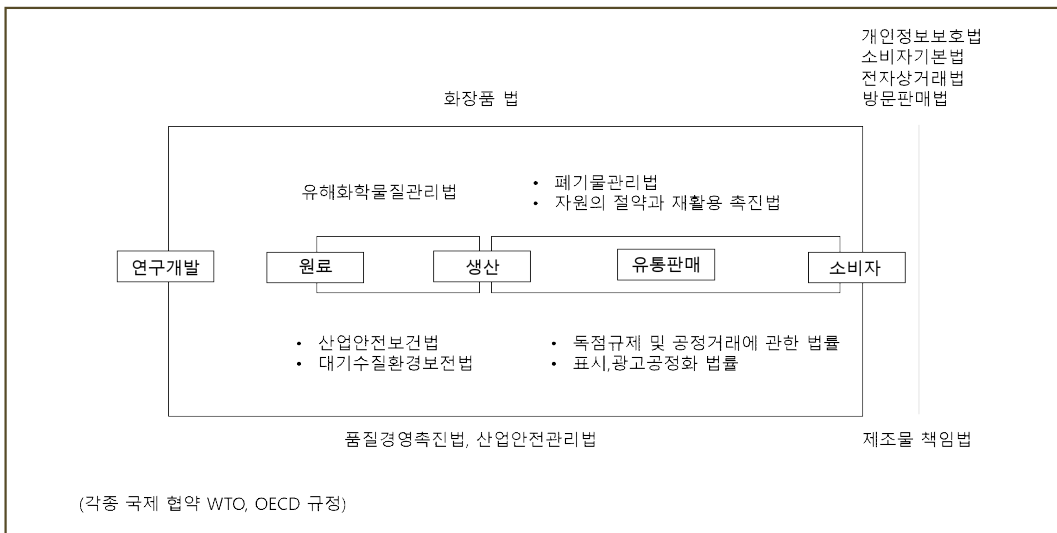
## IV. 국내·외 화장품법 비교

### 1. 우리나라 화장품법<sup>20)</sup>

우리나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법규에도 적용받고 있다. 화장품법 외의 법규들을 정리해 보면, 환경, 소비자 안전, 산업 안전, 공정 거래, 국제협약 등과 같은 여러 법규에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환경 관련 법규들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은 화장품 제조업과 관련된 법규들이다<sup>21)</sup>.

그리고 화장품 유통과 관련 된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제조물 책임법, 산업안전보건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표기,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수출입을 위하여 OECD 규정, WHO 규정 등 국제협약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림 1〉 화장품과 관련 된 우리나라 법률



출처: 이승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화장품법 개정 방향”,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6, p.50~51

20) 법률 제18448호, 2021.8.17. 일부개정

21) 이승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화장품법 개정 방향,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6, p.50~51.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1장 제2조1에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sup>22)</sup>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2항에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장 제2조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sup>23)</sup>,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sup>24)</sup>,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sup>25)</sup>으로 정의한다.

제2장 제3조에 의하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장품법의 제2장 제3조의2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sup>26)</sup>라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제3조의4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

22) 약사법 제2조의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일본의 경우 화장품은 약사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23) 화장품법 제1장 제2조 10

24) 화장품법 제1장 제2조 11

25) 화장품법 제1장 제2조 12

26) 화장품법 제3조의 2는 2항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2021년8월 17일 개정하면서 시설기준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을 더 첨부하였다.

여야 한다.’라고 자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 2. 외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 현황

주요 외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의 독성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화장품 판매/관리자 자격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에 대하여는 규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기관이 자율적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FDA(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화장품에 관한 사항을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이하의 세부항목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색조의 피부 독성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며 화장품 제조 자격 등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는 Title 21 이하에서 Part 250, 700, 701, 710, 720, 730에서 다루고 있으며 색조에 대한 중독성 규제는 Part 73과 74에서 규정하고 있다<sup>27)</sup>.

〈표 5〉 외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 기관

	규제법률	규제기관	협회
미국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 73.74.82 and 700-740	FDA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CTFA
EU	The Cosmetics Directive 76 / 768 / ECC	EU 집행위원회	COLIPA
일본	약사법	후생노동성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출처: 이승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화장품법 개정 방향",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6월, p.51

Eixarch, Wyness and Sibanda(2019)의 논문에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EU의 규정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9년 제정된 EU Cosmetics Regulation 1223에서는 일반적인 화장품 규정에 관한 사항만 제시하고 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8)</sup>.

이 논문에서도 맞춤형화장품 제조 시 EU의 화장품 제조 규정 Article 8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의 다른 규정들은 Article 10의 안전규정, Article 12의 샘플링과 분석 규정, Article 13의 원료에 대한 공지 규정, Article 19의 성분표시 규정 그리고 Article 23의 심각한 화장품 부작용 규

27) FDA Regulation site 참조

28) Helena Eixarch, Louis, Musa Wyness and Sibanda, "The Regulation of Personalized Cosmetics in the EU", MDIP journal, 2019.05.05.

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제조의 자격에 대한 부분의 규정 적용 등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화장품 법규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정한다. 이에 대한 관리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 하고 있다. 미국과 EU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맞춤형화장품 자격에 대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다<sup>29)</sup>.

### 3.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 비교

〈표 6〉 화장품 관련 규정 비교

	화장품제조 및 수입	맞춤형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미국	화장품제조 자발적 등록	규정없음	규정없음
EU	허가 규정은 없으나 책임/의무 규정 있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본	약사법에 ‘화장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수입판매의 허가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우리나라	신고 및 책임 규정있음	신고/자격제도 있음	규정있음 <sup>30)</sup>

참조: 이승진, 전개논문 pp52-58, 우리나라 화장품법, FDA Regulation site.

<표6>에 보듯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규정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효과로 화장품 효능에 대한 광고가 제한되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함으로 화장품 산업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9) 심정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경력개발과정 및 자격시험제도 운영에 관한 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화장품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10, pp.27-31

30) 화장품법 제1장 제1조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V.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과 대체적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제도

### 1.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

#### (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제도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외국에는 없는 화장품책임관리자 자격제도를 2011년 8월 화장품법을 개정된 후 2012년도부터 시행하였고 이번 2020년도부터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자격제도를 시행하였다.

화장품책임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의 의도는 화장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공계 졸업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격 기준에 이공계 중 화장품 관련 분야, 화장품 제조 또는 관리업무 2년이라는 조건 사항이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와 비교하여 너무 까다로운 자격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6년도에 모든 이공계 전공자로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공계 전공자 중 건축학과, 전자공학과 등 화장품과 관련이 없는 전공자도 화장품책임관리자 자격을 부여 받게 됨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는 화장품책임관리자 자격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격제도이다. 그리고 화장품책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공계 전공자, 화장품 관련 분야, 화장품 제조 또는 관리업무 경력자도 모두 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의 의미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전문인력 양성하여 새로운 전문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자격시험은 화장품 조제에 관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련 학과 출신들도 불합격되는 자격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돈벌이 수단입니까?’의 국민청원에는 4,300명이 참여하였다. 이청문의 내용은 시험의 난이도 문제와 높은 응시료에 대한 항의였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대상이

‘전문가인지?’, ‘이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의도는 일자리 창출이 었지만 너무 높은 난이도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합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필기시험만 실시하는 국가자격증의 응시료 10만원도 너무 높은 것을 지적하였다.

2021년 6월9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화장품 업체들의 건의 사항 중 맞춤형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자격증 시험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화장품관리사를 고용하던지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합격률이 7%에 불과한 자격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고부가가치인력이라 채용하기가 힘들다는 불만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 없이도 화장품과 미용 제품의 리필이 가능한 업체 운영허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는 이미 허가받은 원료와 성분을 화장품에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 유형 데이터를 근거하여 레시피를 제시한다면 화장품 판매자가 조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의 의도한 대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자격시험의 문턱을 낮춰 경력단절 된 인력들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재취업이 문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 (3)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화장품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에 대하여 외국에는 존재도 하지 않은 자격제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너무 낮은 합격률 등으로 인하여 원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화장품 독성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아래 <표 7>을 보면 화장품 사용에 의한 이상반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7〉 화장품 부작용 반기별 20건 이상 이상반응을 보고한 품목의 주요 유해 사례

연도	제품명	건수(건)	유해 사례
2015년 상반기	피지오겔 크림	56	따가움, 홍반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53	
	메디엘 실크벨벳 마스크	46	
	피지오겔 로션	45	
	애플루트 앰플	44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30	
	울트라필업앰플	23	
2015년 하반기	피지오겔 크림	36	홍반, 가려움 등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스 크림	34	
	레스틸렌 나이트 크림 50ml	20	
2014년 상반기	피지오겔 로션	49	작열감, 발진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25	
	피지오겔 AI 리페어 로션	21	
2014년 하반기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28	가려움, 발진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28	

출처 : 박일우, “화장품 부작용 최다 브랜드 ‘피지오겔·세타필’”, CMN, 2016.10.07.자, 접속일 2021.10.12., [http://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20759](http://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20759)

화장품은 불특정 다수가 매일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화장품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 하나이다. 화장품의 제품의 질을 보증하는 요소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등 4가지가 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수 많은 제품들이 있고 사용되는 원료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화장품원료는 7000여가지 원료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원료기준(약칭:장원기)와 대한민국 화장품원료집(Kore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KCID)에 수록되어 있다. 한가지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일반적으로 20-50가지의 원료들이 배합된다. 화장품법 제8조제1항,제2항, 제5항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기준을 규정해 놓았다.

맞춤형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뷰티누리 인터뷰에서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며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각각 다른 업체의 제품을 혼합해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은 조제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실기시험이나 다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sup>31)</sup>.

피부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의업계에서는 DTC-유전자 검사의 정당성이 왜곡될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sup>32)</sup>. DTC-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상담이나 기타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의 불완전성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검사 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다.

## 2.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제도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 1980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소비자 ‘기본권의 보호’에서 ‘소비자 권익의 증진’으로 목적이 바뀌었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8〉 화장품 독성에 의한 부작용 피해 외 피해 유형

(단위 : 건, %)

구분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	품질	안전	표시광고	기타 **	계
통신판매	137 (26.1)	136 (26.0)	127 (24.2)	44 (8.4)	57 (10.9)	23 (4.4)	524 (100.0)
일반판매	50 (29.4)	23 (12.5)	44 (25.9)	35 (20.6)	2 (1.2)	16 (9.4)	170 (100.0)
방문판매	104 (64.2)	8 (4.9)	17 (10.5)	16 (9.9)	2 (1.2)	15 (9.3)	162 (100.0)
계	291 (34.0)	167 (19.5)	188 (22.0)	95 (11.1)	61 (7.1)	54 (6.3)	856 (100.0)

\* 계약불이행 :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사은품 미지급 등

\*\* 기타 : 부당행위, A/S 불만, 가격 불만 등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20.08.04. p.1

화장품과 관련 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으로 발생하거나 피부의 문제임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피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화장품거래가 인터넷 등의 전자거래가 발달되고 있어 더 많은 소비자

31) 홍민영, “맞춤형화장품, 실무강화/부작용대처 필요하다.” 「뷰티누리」, 2020.06.12.자, <https://www.beautynury.com/m/news/view/89040>

32) 김나경, 전개논문, pp. 89-90.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는 소비자는 증명의 곤란성을 겪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에 대한 청구요건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하지만 화장품 부작용의 경우에는 주관적 관점이 많기 때문에 손해피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경우 분쟁의 논점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인 제3자를 개입시켜 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청구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대체적 방법으로 ADR을 활용할 수 있다.

〈표 9〉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계약 종류	관련 법률	청약철회(계약해지)
화장품 구입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단, 위약금 발생)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20.08.04. p.2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함)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전통적 재판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33)</sup>.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이 아닌 직접 당사자의 교섭인 협상이나 제 3자의 관여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및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ADR을 소송과 비교해보면 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사소송은 엄격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ADR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은 분쟁 후 당사자간의 관계가 악화 될수 있으나 ADR은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게 하여 만족감을 주며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감정대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민사소송은 법관의 일방적인 판정인데 비해 ADR은 전문가들이 관여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sup>34)</sup>.

ADR을 이용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의 3가지 방법이 있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달하는 것이고,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의

33)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 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 p172

34)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4, p.29

협력 하에 항의할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이 내린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중재인의 판정은 구속력이 발생한다<sup>35)</sup>. 중재판정이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의 실체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ADR을 사법형 분쟁조정제도, 행정형 분쟁조정제도, 민간형 분쟁조정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화장품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ADR의 유형 중 민간 분쟁조정 제도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분쟁조정 상설기구가 대한상사중재원만 존재할 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제도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sup>37)</sup>.

둘째, 제3자 전문가의 중재에 따른다. 피부과 의사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은 불만과 불신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은 고액이나 신체 상의 위중한 피해는 아니므로 중재와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화장품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은 국제 규정에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국제규정에 맞게 개정해 나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 VI. 맺으며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는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된다.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제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35) 신동호, 소비자분쟁에서 대체적분쟁절차(ADR)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2. p.50

36)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 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3, p.61

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1.5.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있으므로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 의도는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자격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산업체의 발전에 외려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 잡기 전에 중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는 국제규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격제도의 의무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전문가들의 화장품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감독하여 제조된 화장품에 성분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에 합당할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 목적에 맞게 난이도가 완화되어 합격률을 높인다면 경력단절 인력이나 업종 변경을 원하는 인력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고 중소 화장품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전문인력이 취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이 상시사용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화장품 성분 중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의 함량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화장품은 책임판매관리사의 감독하여 제조되고 판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소비자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화장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ADR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소액으로 발생하거나 피부부작용 등 개인의 주관적인 피해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피해청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ADR 제도 중 민간형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제3자 전문가의 중재로 화장품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3.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2
- 김나겸,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v.19, no.3 통권38호, 2018.
-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지, 제13권 제2호, 2004
- 신동호, “소비자분쟁에서 대체적분쟁절차(ADR)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2
- 심정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경력개발과정 및 자격시험제도 운영에 관한 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화장품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10
- 이승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화장품법 개정 방향”,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06
- 홍지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방향성에 대한 연구: 피부미용사의 직무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사법정책연구원, 2016.4
- 관세청, “수출입통계”, 접속일 2021.7.27.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 권태홍, “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률 7.2% 역대 최저”, 2021.3.26.자, 접속일 2021.9.19. <http://www.cncnews.co.kr/mobile/article.html?no=5901>
- 권태홍, “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률 10.1%”, 2020.11. 3. 접속일 2021.11.27.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651>
- 김태일, “중국 글로벌 트렌드 도입 등 아세안 화장품 규정 변화 중”, 『뷰티누리』, 2020.06. 17.자, 접속일 2021.9.25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89118/cat/10>
- 박일우, 화장품 부작용 최다 브랜드 ‘피지오겔·세타필’, 『CMN』, 2016.10.07.자, 접속일 2021.10.12., [http://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20759](http://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20759)
- 이수중,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 『식약일보』, 2021.04.23.자, <http://www.kfdn.co.kr/51575>

정민준, “식약처,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6번째 정회원국 가입”, 「의학신문」, 2020.12.08.자, 접속일 2021.9.28.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604>

최지흠, “[용두사미 화장품법③] ‘DIY 키트 팔 때가 낮다…’ 맞춤형화장품제 무용론”, 「시장경제」, 2021.05.03.자, 접속일 2021.8.18.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20.8.16. 접속일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77338>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23>

허강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모두 58곳 신고 완료”, 「코스모닝」, 2020.06.13.자, 접속일 2021.9.3.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012>

홍민영, “맞춤형화장품, 실무강화/부작용대처필요하다.” 「뷰티누리」, 2020.06.12.자, 접속일 2021.9.17.

<https://www.beautynury.com/m/news/view/89040>

Helena Eixarch, Louis, Musa Wyness and Sibanda, “The Regulation of Personalized Cosmetics in the EU”, MDIP journal, 2019. 5. 5

Food & Drug Administration,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2021, Retrieved August 21, 2021, from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ws-regulations/regulations-related-cosmetics-title-21-code-federal-regulations-21-cfr>

## ABSTRACT

### ADR systems as solutions to reduce disputes of cosmetic law - Focusing on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Customized Cosmetic Preparation Managers -

Ju Ri Kim

The customized cosmetics prepar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March 2020, and it served to create jobs by developing professionals and vitalizing the cosmetics business.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high examination fees, suitability of questions, and utilization in industries are emerging.

This paper attempts to prevent disputes that the system can caus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by researching customized cosmetics, the industry status, and comparing foreign cosmetics laws.

There is a kind of opinion that laws should be eased for this industry and the other opinion that expertise is necessary in this field because of safety. The system now has adverse effects due to a failure to adjust the difficulty of the exam.

Cosmetics are not prescription-based, so they are routinely used. However, some toxic ingredients can cause side effects if they do not conform with certain standards.

Also, it is difficult for a case to lead to lawsuits because most consumer damages related to cosmetics are individual. In addition, as e-commerce develops,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seeing more consumer damages.

If safety and distribution issues, which experts are concerned about, escalate, the priv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ADR systems) should be activated as a resolution method.

**Key Words** : Cosmetic Law, Customized Cosmetic Preparation Managers. Cosmetics sales manager, ADR System, Cosmetic Companies